



제422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국 방 위 원 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음피해 보상금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책정〉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987호)

2025. 2.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류 승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대식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10. 29.
3. 회부연월일 : 2024. 10.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장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런데 보상금액 산정 기준을 2010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책정할 경우 현재의 물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보상금액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책정한다고 규정하여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그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6항).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소음피해 보상금을 책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 ① ~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보상금액,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제14조(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이 경우 보상금액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 개정안은 2010년 대법원 판례¹⁾를 기준으로 책정된 현행 법령의
소음피해 보상금 기준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책정하려는 것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경우 오랜 기간 피해를 감수해 온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
임.

1)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6가합23904(2006.12.5.)에서 대구비행장 인근 주민들에게 전투기소음의 특성, 소음정도, 주된 비행시간 및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월 45,000원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고, 대법원 선고 2007다74560(2010.11.25.)에서 이를 확정하였음

[소음대책지역 및 보상금 기준]2)

구 분		소음대책지역		
		제3종	제2종	제1종
비행장	대도시지역	85이상 90미만(웨클)	90이상 95미만(웨클)	95 이상(웨클)
	기타지역	80이상 90미만(웨클)		
사격장	대형화기	84이상 90미만(dB(C))	90이상 94미만(dB(C))	94 이상(dB(C))
	소형화기	69이상 77미만(dB(A))	77이상 82미만(dB(A))	82 이상(dB(A))
보상금 (1인당)		월 30,000원	월 45,000원	월 60,000원

□ 다만,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유사 입법례로는 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3)의 “최저보장수준”, 「기초연금법」 4)의 “기준연금액”,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5)의 “공제료”, 「수산업

- 2) 군소음보상법 제정시 국방위원회(제369회국회 제1차 법안소위, 2019.7.15.)에서 소음기준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논의하였고,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보상금 지급기준 및 보상금액은 2010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책정하였음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제6조(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 4) 「기초연금법」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은 제2항 또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연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 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공제료) ① 공제가입자는 공제료를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가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에게 공제료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 간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 지급 실적, 전전년도의 공제 사업 및 예방 사업 등의 운영경비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공제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6)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과 같이 다수의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가격을 고시하는 경우 등이 있는 반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7),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8)과 같은 여러 보상 관련 법률 등에서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입법례가 없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9) 등 다른 보상 관련 법률에도 형평성 측면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달라는 개정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현행 소음피해 보상금의 금액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에 규정된 보상금 기준을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 6)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관리협약의 준수 등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급요건을 이행한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일반지역과 조건불리지역과의 어업소득의 격차,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7)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보상금) ①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그 근무시기·근무기간 및 복무형태 등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 8)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보상금) ① 피해자중 제2조제2호가목(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나목(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여·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하 이 조에서 “월평균임금”이라 한다)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9)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위로금) 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사망한 날 또는 상이를 입은 날부터 보상결정이 있는 날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위로금을 지급한다.

다만, 동 법률은 2019년 11월에 제정되어 2021년 12월에 최초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였고, 2022년에 소음피해 보상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것이므로 법률의 효과 및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

- 국방부는 「공항소음방지법」을 포함한 다른 보상 관련 법률에서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입법례가 없고, 다른 보상 관련 법률에서도 형평성 측면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달라는 개정 요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타 법률과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09